국 민 투 표 공 보

안성군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

1. 憲法改正의 理由

現行憲法이 制定·實施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憲政을 通하여 經驗한 實定法上의 未備點을 補完하는 同時에 現下의 國內外情勢에 비추어 時急한 政局의 安定, 國防態勢確立 및 持續的인 經濟成長等의 諸要請에 副應하기 爲하여 이 改憲案을 提案하는 것임.

2. 憲法改正의 主要骨子

1. 國會議員의 數를 現行 150人 以上 200人 以下에서 250人 以內로 늘린다.
2. 國會議員은 國務總理·國務委員을 兼할 수 있도록 한다.
3. 大統領을 彈劾하는 경우에 있어서 發議 및 議決定足數를 높인다.
4. 大統領의 繼續在任은 3期에 限하도록 한다.

3. 憲法改正案

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項 "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를 "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5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로 한다.

第39條 "國會議員은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地方議會議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를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第61條第2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50人以上의 發議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第69條第3項 "大統領은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를 "大統領의 계속 在任은 3期에 限한다"로 한다.

附　則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EE0211191

4. 국 민 투 표 절 차

1. 투 표 일 1969년 10 월 17 일

2. 투표시간 1969년 10 월 17 일 상오 7시부터 하오 5 시까지

3. 투표할수있는자 헌법개정안 공고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1949. 8. 10. 이전 출생자)

4. 투표장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소(투표통지표에 적혀 있음)

5. 투표통지표

가. 10월15일까지 구·시·읍·면에서 투표인 본인에게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나. 투표통지표의 보기

투 표 통 지 표	
투표인명부 등재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투표장소	

귀하는 투표권이 있읍니다.

10 월 17 일은 국민투표 투표일입니다.

1969 년 10 월 일

○○「구」·「시」·「읍」·「면」의장 ㊞

切

線

○ ○

투표통지표수령증

투표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인성명	
투표인과 수령자와의 관계	

위의 투표통지표를 수령하였읍니다.

1969 년 10 월 일

수령자 ○ ○ ○ ㊞

다. 10 월 15 일까지 구·시·읍·면에서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는 10 월 16 일에 다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6. 투표용지모형

이번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 투표용지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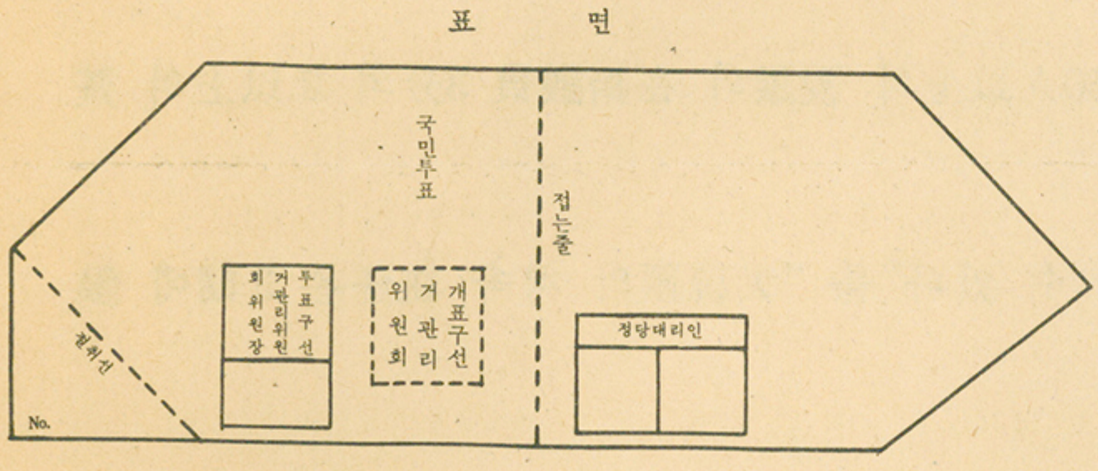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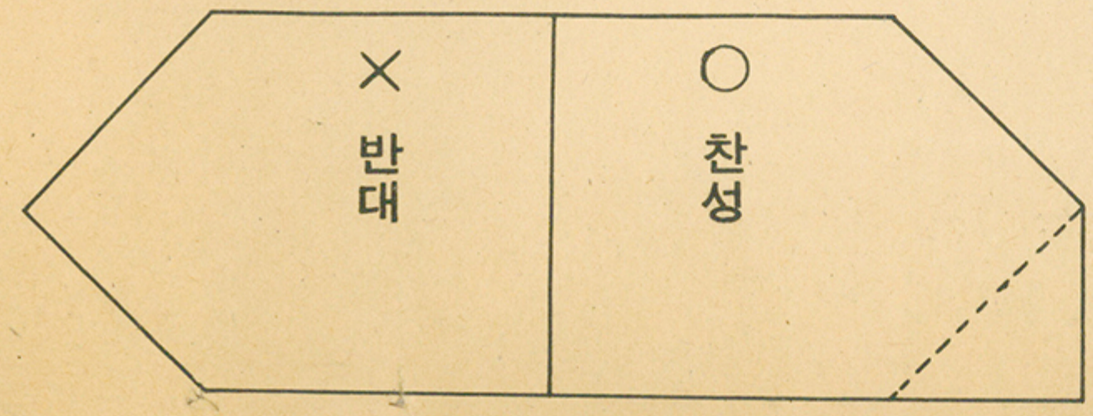

7. 투표방법(투표소에서 하는 방법)

가. 투표인은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정당에서 나온 접수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게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보이고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 받은 뒤

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앞에 가서 투표용지 한장을 받아

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정당에서 나온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투입함에 넣고

라.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소 안에 마련되어 있는「붓뚜껑」으로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가지고 기표소를 나와 투표지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마. 투표소내의 설비와 투표절차등은 대체로 다음 보기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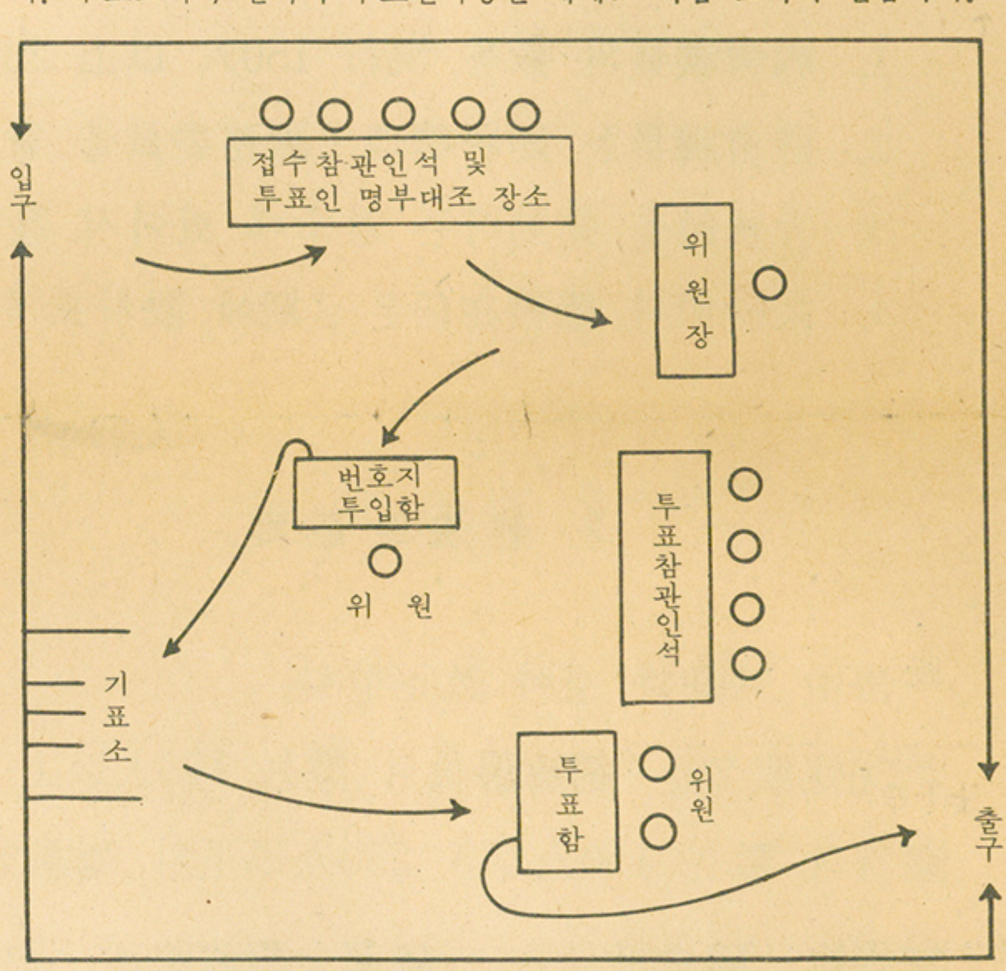

8. 무효투표의 예시(例示)

다음의 투표는 무효가 되오니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찬성·반대 어느쪽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 찬성·반대 어느쪽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9.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는 꼭 가지고 나와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합니다.

10. 투표권자는 투표일인 10 월 17 일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와 투표합시다.

11. 투표할때 특히 알아두어야 할 일

※ ○표를 하여야 합니다.

※「붓뚜껑」이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 봅시다.

※ 인주(印朱)가 다른곳에 묻지 않도록 조심 합시다.

EE0211191

(국 민 투 표)

올바르게기표하는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찬성하는 경우

찬성할 때에는 "○**찬성**"이라는 칸에 기표소안에 마련된 붓뚜껑으로○ 표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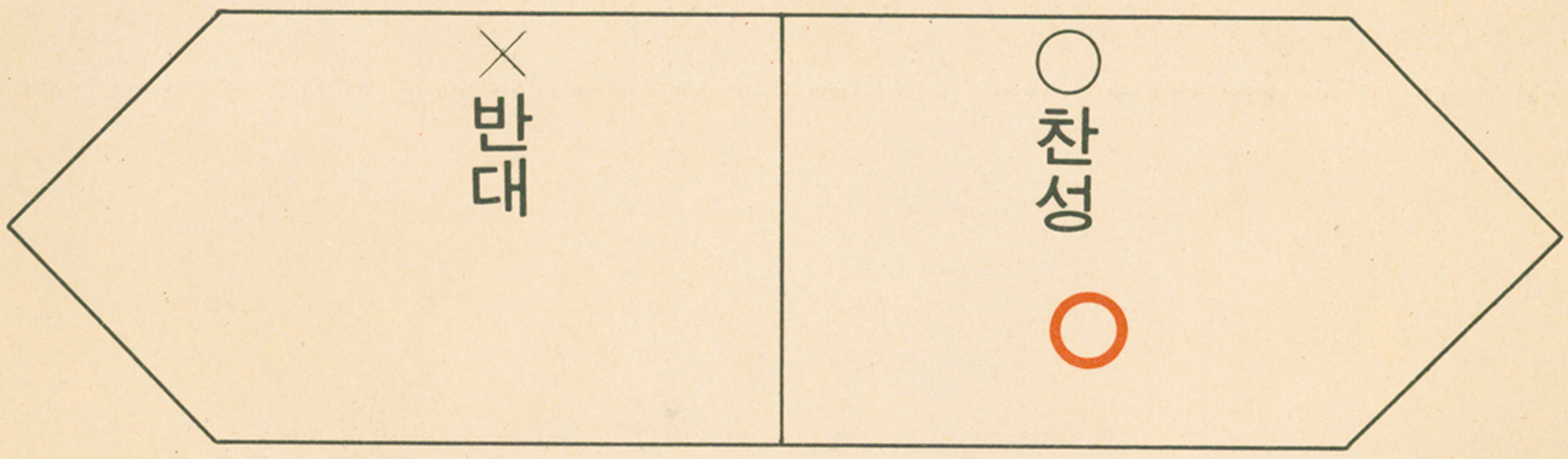

2. 반대하는 경우

반대할 때에는 "×**반대**"라는 칸에 기표소안에 마련된 붓뚜껑으로○ 표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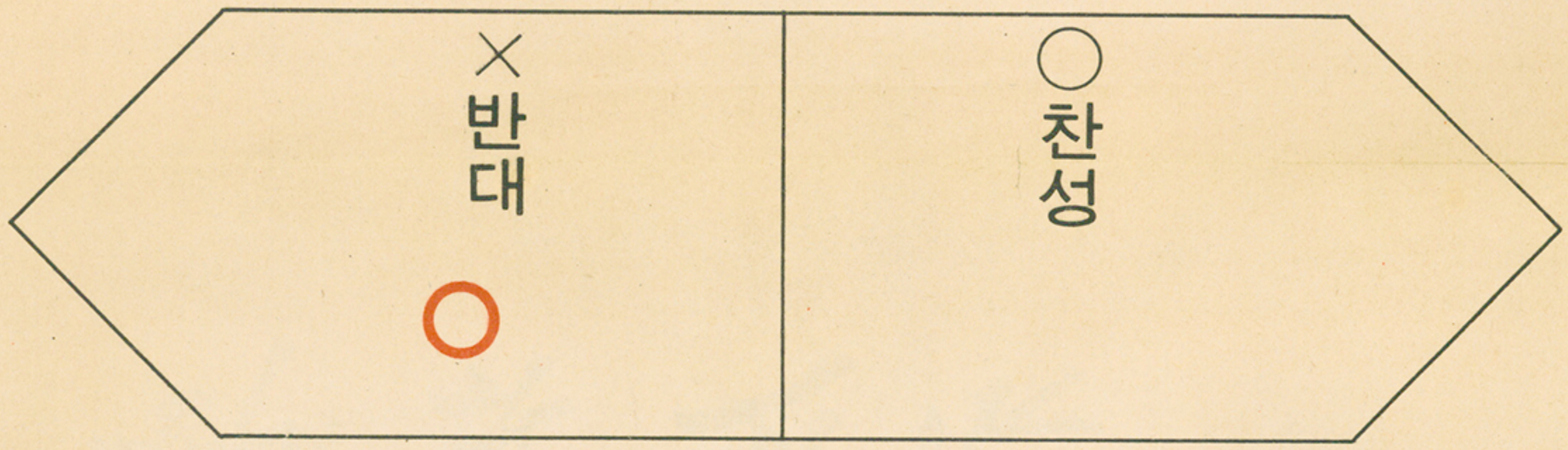

3. 투표방법

가. 투표인은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정당에서 나온 접수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게 주민등록증 과 투표통지표 를 보이고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 받은 뒤

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앞에 가서 투표용지 한장을 받아

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정당에서 나온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투입함에 넣고

라.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소 안에 마련되어 있는「붓뚜껑」으로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가지고 기표소를 나와 투표지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4. 투표할때 특히 알아두어야 할 일

가. 투표일 10 월 17 일

나. ○ 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 인주(印朱)가 다른곳에 묻지 않도록 조심 합시다.

라. 주민등록증 은 꼭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5.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오니 주의 합시다.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것.

나. 찬성·반대 어느쪽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것.

다.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것.

라. 찬성·반대 어느쪽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것.

마. ○ 표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EE0211191

安城風雅

EE0211191